

○ 동두천시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안) 의견청취의 건

동두천시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안) 의견 청취의 건

의 안	
번 호	

제출년월일 : 2021. 4. .

제 출 자 : 동 두 천 시 장

☐ 제안이유

-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0조 에 따라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사 업 명 : 동두천시 생연2동·중앙동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안)

나. 위 치 : 동두천시 생연동 604번지 일원

다. 면 적 : 179,977m²

라. 사업기간 : 2022년~2025년

마. 사 업 비 : 152.33억 원(국비 80, 도비 16, 시비48.33, 기금 8)

바. 주요내용

- e커머스를 기반으로 일자리창출과 도시경쟁력 회복
- 지속가능한 도시재생을 위한 주민역량·공동체의식 강화
- 주민 생활환경·노령인구의 삶의 질 케어를 통한 사회통합 도모

동두천시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안) 의견 청취의 건

◆ 동두천시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안)에 대한 시의회 의견청취를 통해 지속가능하고 효율적인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고자 함

□ 추진근거

-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0조
- 2021년 도시재생 뉴딜사업 신청 가이드라인(지방의회 의견청취)

□ 추진현황

- 2018. 10. 도시재생 전략계획 및 활성화계획 수립 용역 착수
- 2019. 9. 전략계획 경기도 사전 검토 및 승인 요청(경기도)
- 2020. 2. 전략계획 경기도 도시재생위원회 최종 승인
- 2020. 5. 경기도 문화영향평가 공모사업 및 국토부 도시재생 예비사업 선정
- 2020. 7. 2020년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모 신청 및 미선정
- 2020. 10. 도시재생 예비사업 추진 계획 수립
- 2021. 1. 2021년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모제안서(활성화계획) 작성 용역 착수
- 2021. 3. 컨설팅 실시(경기도, LH도시재생지원기구)

□ 향후계획

- 2021. 5.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안) 승인 요청 및 뉴딜사업 공모 신청
- 2021. 6. 1차 도 평가 실시(서면·현장·발표평가)
- 2021. 7. 국토부 실현타당성 평가 및 관계부처 협의
- 2021. 9. 국토부 도시재생특별위원회 심의 및 사업 선정

□ 활성화계획(안) 개요

○ 과업의 범위

- 공간적 범위

- 위치 : 동두천시 생연동 604번지 일원(생연2동 · 중앙동 일원)
- 면적 : 197,977㎡

- 시간적 범위 : 2022년~2025년

- 내용적 범위

- 계획의 목표설정
- 도시재생사업 계획 수립 및 파급효과 분석
- 공공 및 민간 자원조달계획 등 예산집행계획 수립

○ 과업의 주요내용

- 쇠퇴양상 및 원인 진단 : 인구·산업·건물 등 대부분 분야에서 쇠퇴양상을 보임



- 상위계획과의 정합성을 고려한 사업계획 수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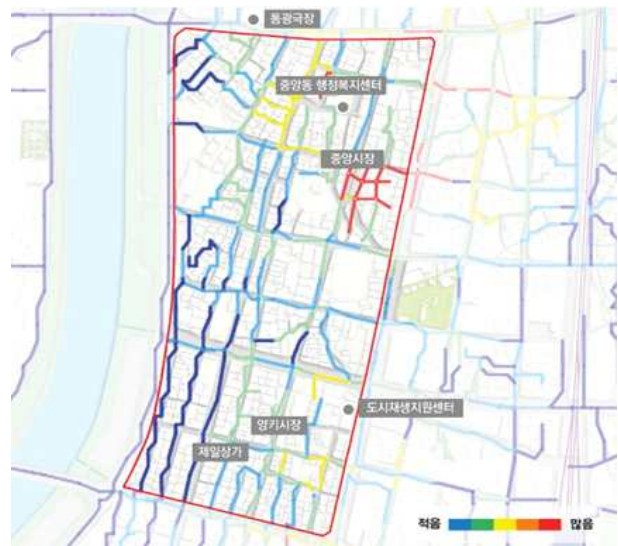


- 주민들의 의견과 수요를 반영한 사업계획 수립

- 분석방법 : 설문조사, 상인간담회, 주민설명회, 도시재생대학을 통해 의견수렴
- 분석결과 : 커뮤니티센터, 노인돌봄시설, 시장지원시설, 공원, 주차장 조성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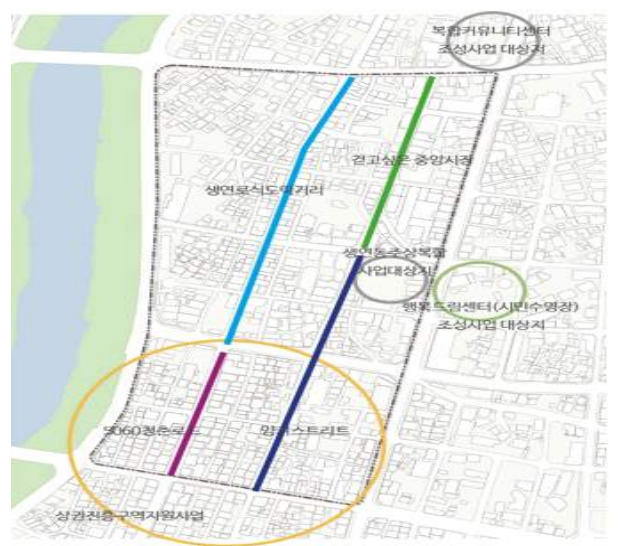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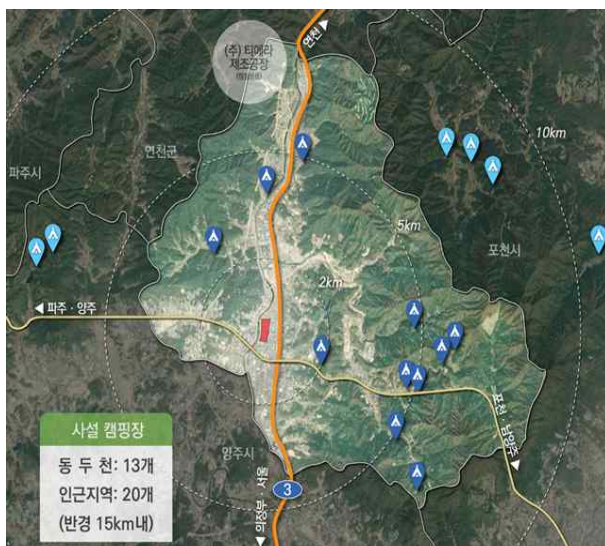
- 상권분석을 통한 경제활성화 방안 수립

- 상권평가등급 : 성장성 · 영업력 부문에서 낮게 평가
- 유동인구 : 중앙시장 위주로 대상지 북부로 집중되어 제일상가 · 양키시장의 인구유입 방안 수립 필요



- 동두천시의 내외부의 다양한 사업들과의 연계방안 확보

- 캠핑 수요를 활용한 사업의 연계방안 확보
(캠핑장 수 : 13개 / 사이트 수 : 282개 / 2020년 이용객 수 : 72,084명)
- 행복드림센터 조성, 상권진흥구역, 5060청춘로드 조성 등과의 연계



○ 비전 및 추진전략

비 전

Do Dream Project
동두천 캠프 in 생연중앙계획

목 표



추진전략

e커머스 기반
도시경쟁력 회복

세대 맞춤 돌봄 및
주민 공동체 활성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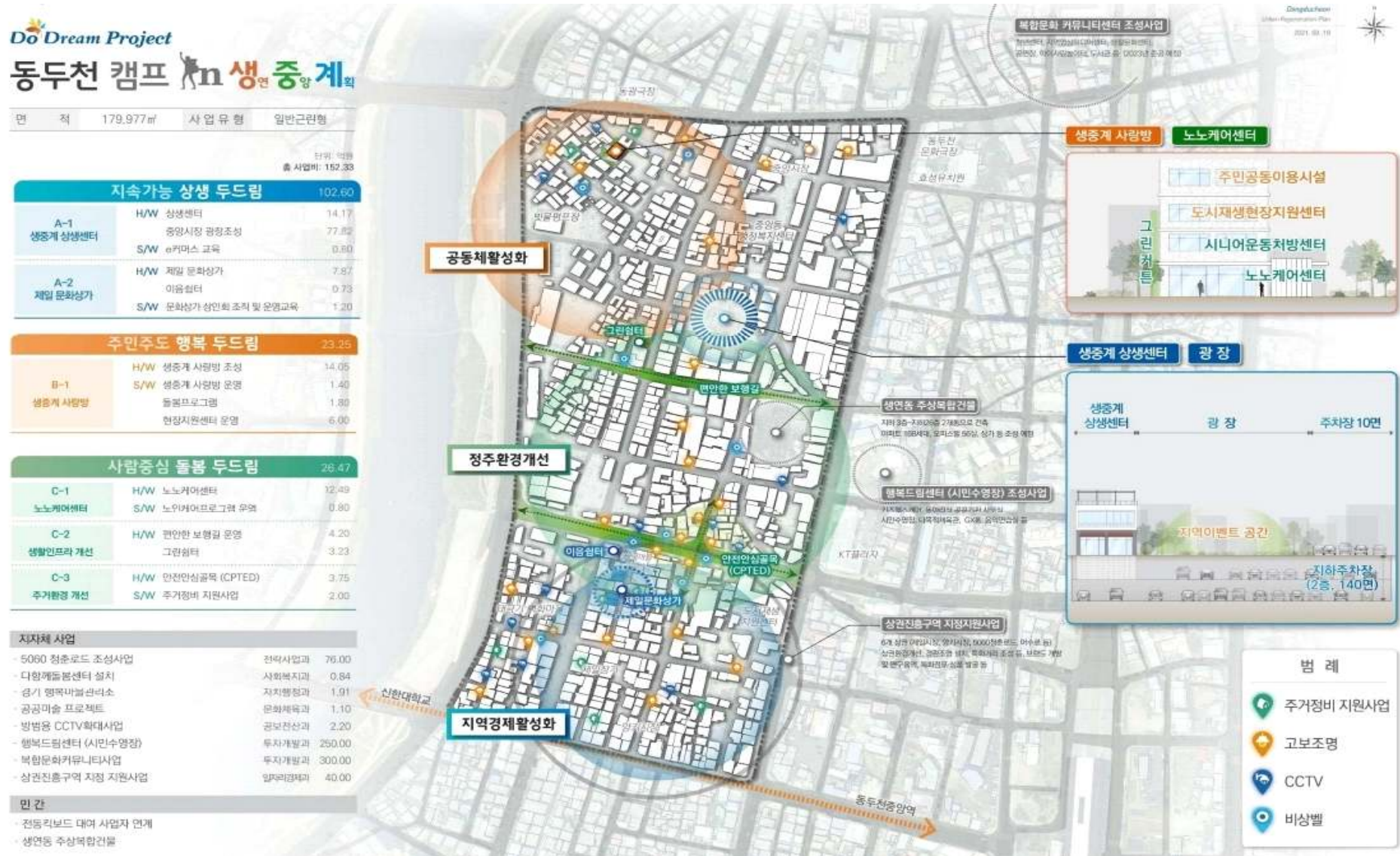
편안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조성

- A-1 생중계 상생센터**
 H/W 생중계 상생센터
 중앙시장 광장 조성
 S/W e-커머스 교육
- A-2 제일문화상가**
 H/W 제일문화상가
 이음쉼터
 S/W 문화예술협동조합 육성
 주민생활문화기반 조성

- B-1 생중계 사랑방**
 H/W 생중계 사랑방 조성
 S/W 생중계 사랑방 운영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
- B-2 시니어 활력센터**
 H/W 시니어활력센터 조성
 S/W 시니어 일자리 카페
 老-老 건강케어 프로그램

- C-1 주거환경개선**
 H/W 그린쉼터 조성
 S/W 주거환경개선(리모델링)
 마을관리협동조합 육성
- C-2 안전한 마을 환경조성**
 H/W 편안한 보행길 조성
 안전골목길 조성
 S/W 범죄예방 활동단 구성

○ 종합구상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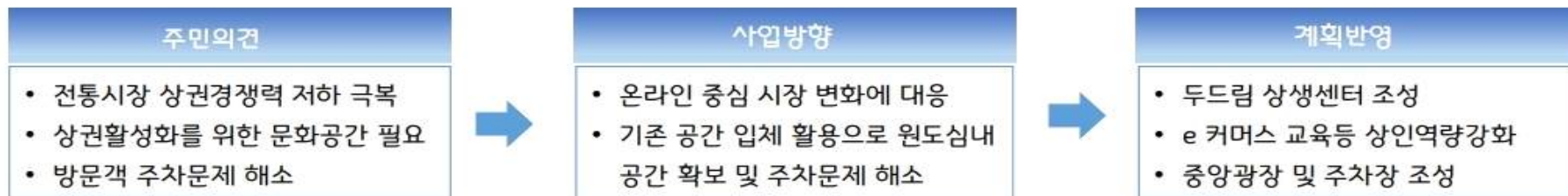


○ 세부사업내용

- 생중계 상생센터 조성

지속가능 상생 두드림

“생중계 상생센터 조성으로 주민과 상인이 상생하는 환경 조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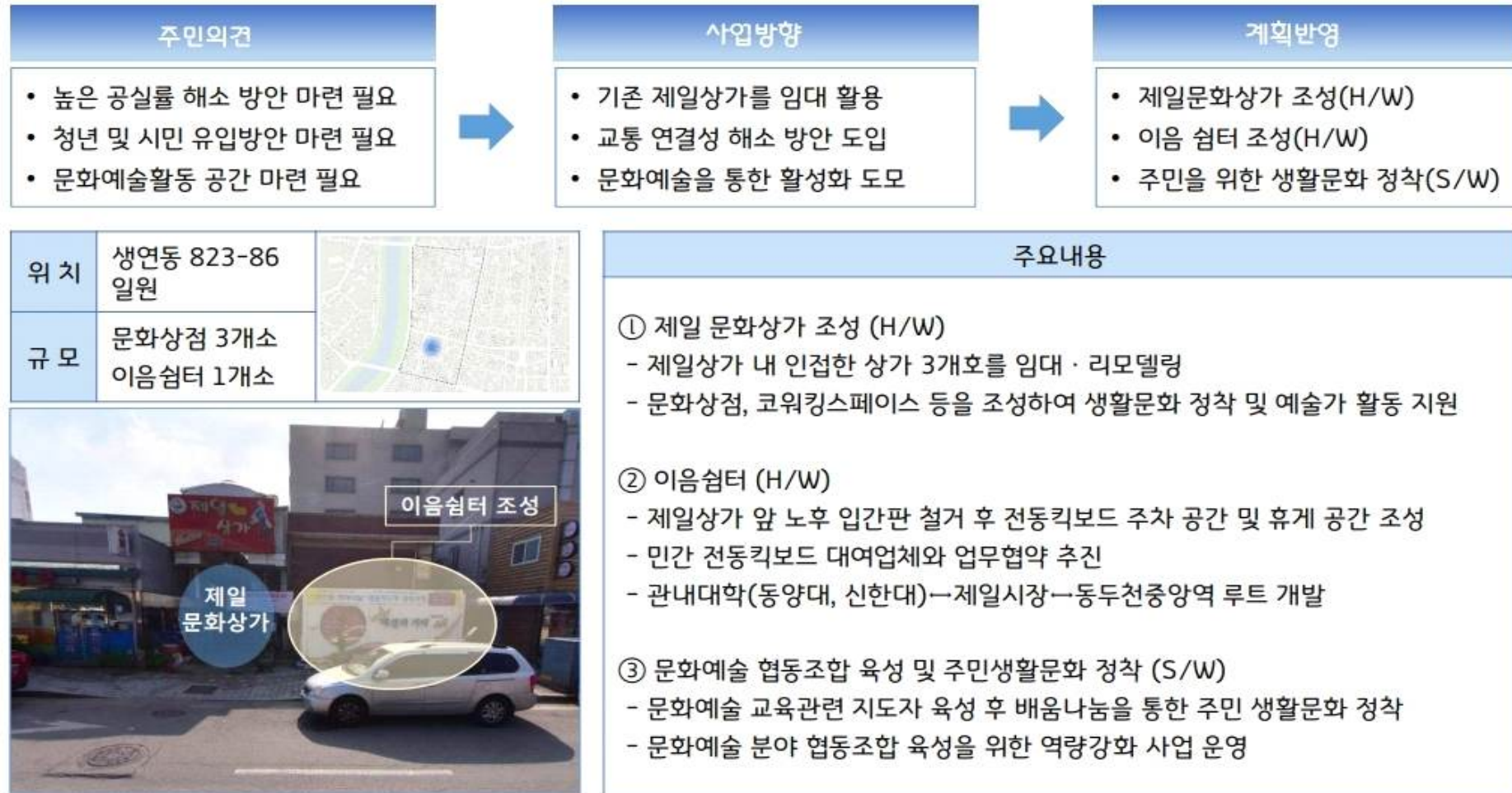


주요 내용
① 생중계 상생센터 (H/W) - 지상 2층으로 구성, 판매 및 작업 등 거점 공간 확보 - 상품촬영 스튜디오, 고객사랑방 등 주민-상인 공유 공간 조성 ② e커머스교육 (S/W) - 시장환경변화에 대응 할 수 있는 온라인 플랫폼 구축 - 밀키트 제작 및 IT 교육 등 상인역량강화교육 ③ 중앙광장 및 중앙시장 주차장 (H/W) - 기존 주차장 지하화로 1층 공개공간 확보 - 주민에겐 공원을 상인에겐 축제 등 이벤트 공간 제공 - 지하 주차장 건설로 부족한 주차문제 해소 - 주차면수: 지하2층 140면, 지상 10면(장애인 주차장 포함)

- 제일 문화상가 조성

지속가능 상생 두드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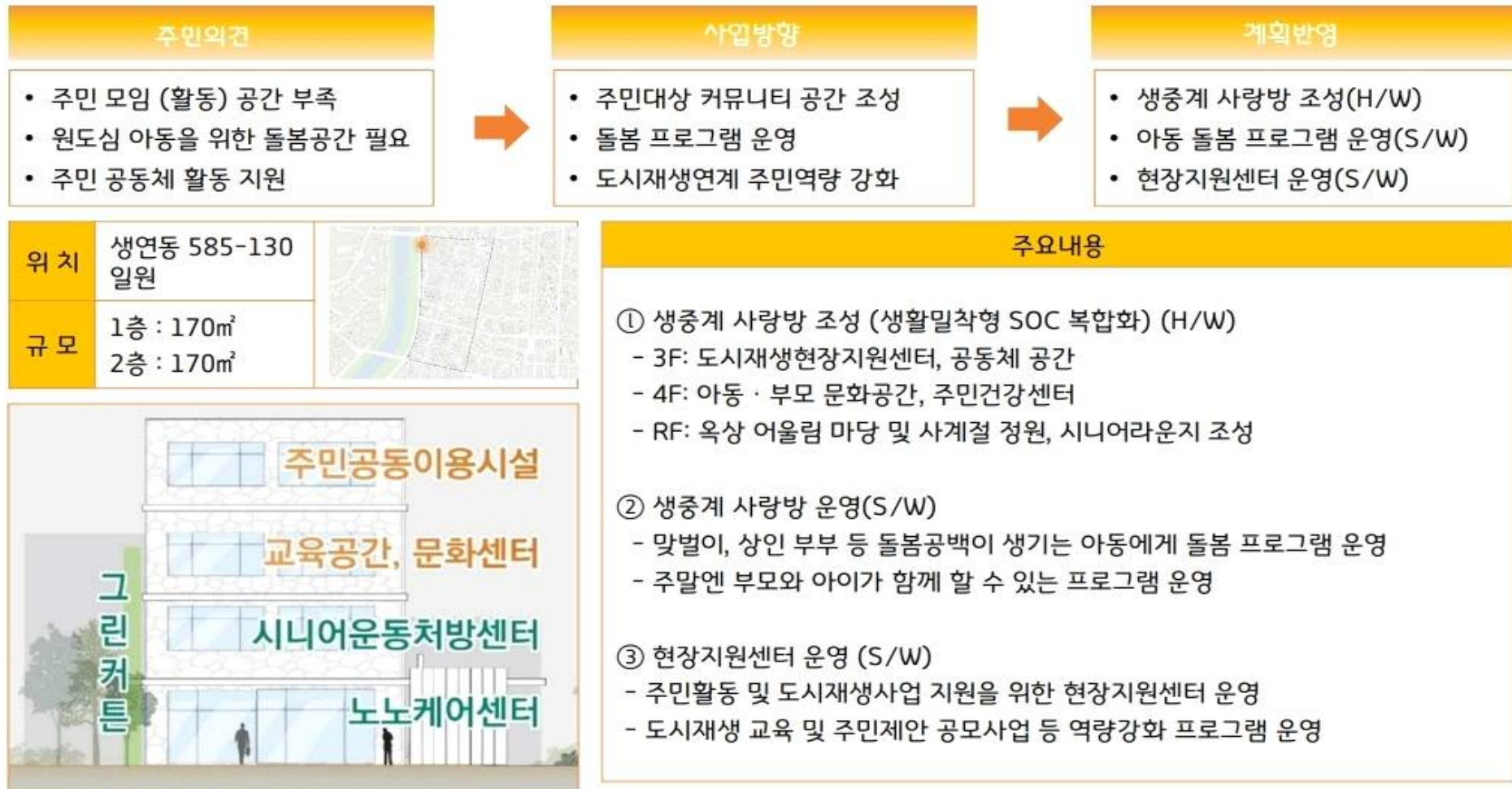
“문화로 세대와 공간을 잇는 제일문화상가”



- 생중계 사랑방

사람중심 돌봄 두드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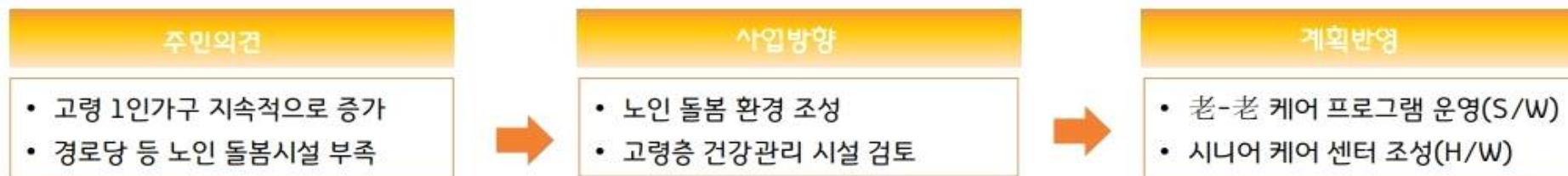
“생중계 사랑방 조성으로 공동체 활성화 공간 마련”



- 시니어 활력센터

사람중심 돌봄 두드림

“시니어 케어 사업으로 고령 맞춤형 생활환경 개선”



위 치	생연동 585-130 일원	
규 모	1층 : 170㎡ 2층 : 170㎡	



주요내용
① 시니어 활력센터 (H/W) - 생중계 사랑방 1,2층에 시니어 활력센터 조성 - 노인 일자리 카페(실버인력뱅크) 및 실내활동공간 조성 - 보건소와 연계하여 시니어 운동처방센터 운영 ② 시니어 일자리 카페(S/W) - “꽃보다 청춘” 시니어 일자리 카페 - 취업 정보 공유 및 직무 교육 등 ③ 老-老 건강 케어 (S/W) - 실버문화활력프로그램 (전통예술 등 문화활동) - 체육교육, 시니어 운동처방프로그램 운영 - 노노케어 인연지기 교육 운영

- 주거환경개선

주민주도 행복 두드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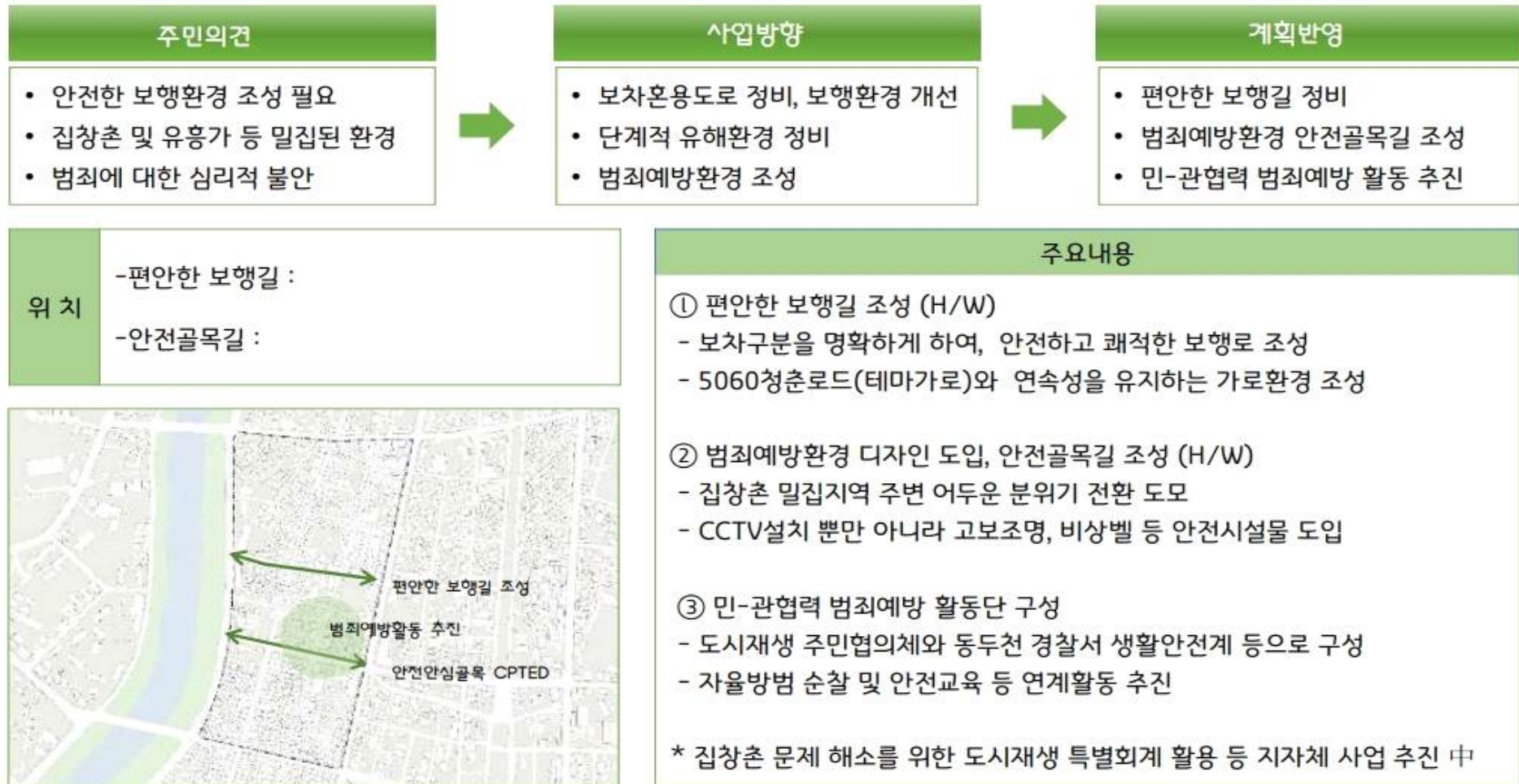
“주거환경개선으로 살기 좋은 생중계 마을 조성”



- 안전한 마을 환경조성

주민주도 행복 두드림

“범죄예방환경설계로 안전한 마을 환경 조성”



○ 사업추진 체계 구성

구 분	기능	주요 거버넌스	주요역할
행정지원 역량기반	재생지원 거버넌스	도시재생 전담조직-도시재생과	도시재생 행정업무 수행
		도시재생 추진단	도시재생 행정 효율화 TF팀
		도시재생 행정협의회	도시재생 유관기관 간 연계협력
현장지원 기반 구축	재생주체 거버넌스	도시재생지원센터	도시재생 계획수립, 조율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도시재생 현장 업무 추진·조율
공동체 협력기반 구축		주민협의체	도시재생 추진 주체

○ 지속적 관리 방안

- 자생적 역량 강화

- 주민, 지자체 공무원, 마을활동가, 주민주도 조직 등 역량강화 교육, 사업여건 조성
- 도시재생대학 운영 : 도시재생 이슈 및 계획 실행방안 습득
- 창업 및 마을기업 운영 :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창업 교육·컨설팅을 통한 맞춤형 지원
사회적 기업 육성을 통한 기업 설립 지원
- 마을 정체성 연구 및 축적 : 마을 아카이브 운영을 통한 마을의 정체성 발굴 및 축적

- 주민주도 자생적 운영방안 마련

- 마을관리협동조합 설립 : 주민 주도형 사업 추진을 통한 지속가능한 마을관리 유도
- 도시재생사업 종료 후 마을관리 협동조합의 기능에 재생사업 관련 사항을 포함하여 독립적 운영

○ 도시재생 뉴딜사업 효과

- 상권 회복을 통한 일자리 창출 및 도시경쟁력 확보
- 주거환경 개선 및 편의시설 확충을 통한 지역주민의 삶의 질 개선
- 주민 및 상인들의 역량 강화 도모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약칭: 도시재생법)

[시행 2021. 4. 1] [법률 제17171호, 2020. 3. 31, 타법개정]

국토교통부(도시재생정책과) 044-201-4907, 4909

- 제20조(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확정 및 승인 등)** 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지방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개정 2019. 8. 27.>
- ②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등이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해당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지방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9. 8. 27.>
- ③ 전략계획수립권자 또는 구청장등은 제1항의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기 전에, 제2항의 경우에는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승인 신청 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청회를 개최하여 주민이나 관계 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수렴하고 해당 지방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 경우 지방위원회는 전략계획수립권자 또는 구청장등이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통지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하여야 하고, 의견제시 없이 60일이 경과한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20. 12. 22.>
- ④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도지사는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국가지원 사항이 포함된 경우 제1항에 따른 확정 또는 제2항에 따른 승인 전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국가지원 사항에 대하여 결정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특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 장과의 협의, 지방위원회 심의, 공청회, 지방위원회의 의견청취 절차 및 특별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19. 8. 27.>
-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결정을 할 때에는 국가가 지원할 대상 사업 및 재원의 규모와 지원방식 등의 조건을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9. 8. 27.>
- ⑦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포함된 국가지원사업을 소관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정부의 재정상황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4항에 따른 결정을 반영하여 예산을 편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9. 8. 27.>
- ⑧ 제4항에 따라 특별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국가지원 사항에 대하여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신설 2020. 12. 22.>
- ⑨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관계 서류를 송부하여야 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계획을 고시하고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9. 8. 27., 2020. 12. 22.>
- ⑩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가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승인한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해당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등에게 관계 서류를 송부하여야 하며, 관계 서류를 받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계획을 고시하고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9. 8. 27., 2020. 12. 22.>
- [제목개정 2020. 12. 22.]

부칙 <제17737호, 2020. 12. 2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5조, 제26조의4 및 제56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도시재생전략계획 수립 또는 변경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후 도시재생전략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 또는 변경에 관한 적용례) ① 제20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전략계획수립권자 또는 구청장등이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지방의회에 통지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20조제8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국가지원 사항에 대하여 특별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도시재생활성화계획부터 적용한다.

제4조(도시재생 인정사업에 관한 적용례) 제26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국가지원 사항에 대하여 특별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도시재생사업으로 인정하려는 사업 또는 도시재생 인정사업부터 적용한다.

제5조(공유재산 취득에 관한 적용례) 제30조제9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공유재산을 취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6조(도시재생선도지역에서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에 관한 적용례) 제34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국가지원 사항이 완료된 후에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변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7조(국가지원지구계획 수립 또는 변경에 관한 적용례) 제56조제3항 및 제6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후 국가지원지구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8조(전문인력 양성기관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이전에 제10조제1항제6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도시재생지원기구와의 계약에 따라 그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은 제26조의4의 개정규정에 따라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